

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서

1. 상 호 :
2. 본점의 소재지 :
3. 자본금에 관한 사항 :
4.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:
5.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:
6.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:
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서명 또는 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※ 첨부서류

1. 발기인회의 의사록
2.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(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,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), 임원·자산운용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의 경력증명서
3. 정관
4.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5. 본점·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
6.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
7. 자산의 투자·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
8.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
9.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(인력 및 물적 시설계획),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
10.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
11. 투자설명서안
12. 내부통제기준
13.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